

#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4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  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  
정재용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  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  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  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  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  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  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  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  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제한 규정의 범위를 변경함(안 제6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##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
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사용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<u>자</u>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위험물이나 약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</u></p> <p>4. <u>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</u></p> <p>5.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자</u></p>	<p>제6조(사용제한) ----- ----- <u>사람</u>----- ----- -----, 1. <u>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